

상호저축은행법

<목 차>

1.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5급						
	국장	정완규		연락처	02-2100-2993						
	과장	신진창		이메일	hongguqaz@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상호저축은행 (79개사)										
5. 규제존속기한	지속적 추진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현행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 등을 우회적 방법으로 회피하는 편법적 신용공여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근거 마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적 근거</th> <th>법 규 명</th> <th>소관부서</th> </tr> </thead> <tbody> <tr> <td>법</td> <td>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td> <td>금융위원회</td> </tr> </tbody> </table>					법적 근거	법 규 명	소관부서	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금융위원회
법적 근거	법 규 명	소관부서									
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금융위원회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제3자에게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교차하여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하는 경우를 금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략)</p> <p>2. 업무용부동산 외의 <u>부동산의 소유</u>. 다만, <u>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u><신설></u></p>	<p>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업무용부동산 외의 <u>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u>. --- <u>저당권 등 담보권의-----</u> -----.</p> <p>2의2. <u>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행위</u></p>

현 행	개 정 안
<p>3.·4 (생략)</p> <p><신설></p> <p>5.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3.·4 (현행과 같음)</p> <p>4의2. <u>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 등으로 우회 출자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u></p> <p>5.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생략)</p> <p>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u>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u>----- -----.</p>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 존재(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으로 인정될 경우 신용공여에 대한 규제가 계열 상호저축은행 단위로 적용되게 되므로 상호저축은행은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으로 편입되지 않으려는 유인 존재
- 또한 지배구조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다른 금융회사와의 교차신용공여 사례가 발견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지배구조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매우 큼
-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권의 특성상 자율 규제가 아닌 정부 개입을 통한 규제가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폐 목적 대출 또는 대주주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대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도모 및 부실화 방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관련된 신용공여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이는 규제할 수 없음

<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업권 특성을 감안할 때 자율 규제로는 규제 목적 달성 불가능

< 규제대안 1 : 편법적 신용공여 금지 규정 강화 >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포함되지 않을 목적 등으로 우회 출자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지
-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교차하여 상대방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하는 경우 금지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도입되는 규정의 특성상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어려움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동 개정은 민간의 자율·창의 등으로 대체가능한 사항은 아님

< 해외사례 분석 >

- 유사 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타법사례 분석 >

- 은행법의 경우 은행이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 하는 행위를 금지(은행법 제35조의2)
- 또한 은행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금지(은행법 제38조)

< 위임근거 검토 >

-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위임근거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16.5.16)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기존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을 새롭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 결론 >

- 기존 규제 내지 비규제대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폐 목적 대출 또는 대주주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대출행위를 규제하려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어 “규제대안1”을 선택